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38

발의연월일: 2021. 7. 26.

발 의 자:서정숙·하영제·이양수

강대식 · 김예지 · 이채익

유두현 • 서일준 • 조명희

최승재 • 이종성 • 전봉민

김승수 · 김성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로정의하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여, 각국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년간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비롯한 신종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 는 상황임.

이에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

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 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조제7호, 제6조의5 및 제6조의6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인건강"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환경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제6조의5 및 제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5(전인건강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이 조에서 "전인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인건강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6(전인건강생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체건강생활, 정신건 강생활, 사회건강생활, 환경건강생활의 전인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가 전인건강생활방식을 연구·교육·실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第2條(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第2條(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전인건강"이란 지역사회 구
	성원들이 신체적・정신적・사
	회적・환경적으로 안녕한 상
	태를 말한다.
<u><신 설></u>	제6조의5(전인건강도시)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을 실현하
	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
	시(이하 이 조에서 "전인건강
	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인건강도시의 지정 기준

<신 설>

•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6(전인건강생활)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질 향상과 의 료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체 건강생활, 정신건강생활, 사회 건강생활, 환경건강생활의 전인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가 전인건강생활방식을 연구 · 교육 · 실천하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